

의안번호	2202807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4. 10. 24.
추 계 번호	24B27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등의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억 3,600만원 (연평균 3억 2,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안 제7조제7항 신설)	1,171	0	152	155	158	1,636	327

주: 1.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추가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가정하고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고도화 관련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7항(자동차등록원부) 신설	제6항 ¹⁾ 의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의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31조의5(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조치) 신설	제3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해당 전기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견인을 위하여 관할 소방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제7항(자동차등록원부) 신설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31조의5(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조치)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 이상 감지 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소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견인하는 경우, 소방관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및 장비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²⁾ 에 따른 2023년 방치자동차 견인 건수는 12,565대로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의 비용으로 견인을 수행하였으나, 그중 2,880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견인하였으며, 소요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약 1억 6,572만원으로, 견인 건수 1건당 평균 약 5.8만원이 소요된 바 있음(첨부 [참고자료 1] 참고)

1)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계함
 - 추계기간 중 첫해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후 유지·관리한다고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에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등의 사항 추가(안 제7조제7항 신설)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비치·관리³⁾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고도화 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구동축전지(배터리) 정보를 연계·전송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경우, 시스템 고도화에 11억 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표 2] 시스템 고도화 비용 산정

기능 점수	기능 단가	보 정 계 수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운영성	보안성
1700	553.114	1.153	1.00	0.95	0.94	1.00
개발원가		968,153,765원				
이윤(10%)		96,815,377원				
소계(부가세 제외)		1,064,969,142원				
부가세(10%)		106,496,914원				
합계		1,171,466,056원				

자료: 국토교통부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에 따라 13% 적용⁴⁾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⁵⁾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현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이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억 3,600만원(연평균 3억 2,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4)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2차 개정판)」)

5)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표 3]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스템 고도화	1,171	-	-	-	-	1,171	234
유지·관리	-	-	152	155	158	465	93
합계	1,171	0	152	155	158	1,636	327

주: 1.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추가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가정하고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고도화 관련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추가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가정하고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고도화 관련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2023년 방치자동차 강제처리⁶⁾ 견인비용 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견인 건수 (A+B+C)	견인비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한 건수(A)	견인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견인한 건수(B)	자체예산 견인 집행 예산 (B의 집행예산)
서울특별시	315	315	0	0
경기도	4,308	2,721	1,587	86,283
경상남도	1,292	1,253	39	2,180
경상북도	902	571	320	18,291
광주광역시	11	11	0	0
대구광역시	589	103	1	130
대전광역시	302	283	19	1,544
부산광역시	1,807	1,709	98	20,120
세종특별자치시	44	44	0	0
울산광역시	199	0	29	870
인천광역시	987	0	0	0
전라남도	269	58	101	5,410
전북특별자치도	596	103	421	11,990
제주특별자치도	138	0	138	5,340
충청남도	88	38	50	2,583
충청북도	340	339	1	165
강원특별자치도	378	16	76	10,810
합계	12,565	7,564	2,880	165,716

주: C(폐차장 견인비용 상계처리, 지자체 자체 보유 견인차로 견인 등 기타 미집계 건수)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

6) 현행법 제26조제2항 관련

[참고자료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명자료⁷⁾

□ 개요

- 자동차 관련 ‘제작에서 폐차까지’ 소유권 및 차적 정보를 관리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및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구축: `08 ~ `10, 운영: `10 ~ 현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 구 성 : 자동차관리시스템, 포털시스템 등 7개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
- ✓ 사 용 자 : 지자체 등록담당 공무원,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제작사, 관리사업자, 대국민 등
- ✓ 민원처리 :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관리(29백만대), 연 7천3백만건(일 21만건) 민원처리

□ 관련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구성도



7)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⁸⁾

□ 개요

- 미래차를 대비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5.5월까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 (기간) '22~'25년, (비용)310억원 (내용) 프로그램 개발(176억), HW/SW(134억)
- 現 시스템을 전면 교체·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이륜차·건설기계*를 온라인 등록대상으로 포함 및 온라인 등록사무 확대**(7→35종)
 - * (연간 등록건수) 이륜차 : 27만건('21년), 건설기계 : 3.3만건('21년)
 - ** (신규) 등록번호변경, 사용본거지 변경, 증여·상속 등 이전등록, 수출 말소등록 등

□ 과업범위(6대 전략과제 18개 이행과제)

6대 전략과제	18개 이행과제
① 국민안전과 민원처리 편의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및 비대면서비스 확대	① 자동차 민원접수 언택트 환경구축
	② 이륜차 온라인서비스 확대
	③ 건설기계 온라인서비스 확대
② 중고차거래 투명화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 및 안전확보	④ 중고차 허위매물 확인 서비스구축
	⑤ 불법차량 단속정보 제공서비스
③ 미래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 정보 체계 수립	⑥ 미래자동차 제원관리체계구축
	⑦ V2X 연계정보 관리서비스
④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통합 데이터관리 체계 수립	⑧ 대내/외 연계관리시스템 구축
	⑨ 자동차통합데이터분석 서비스
	⑩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 서비스
	⑪ 자동차 통합인증체계 구축
⑤ 확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구축	⑫ 클라우드 도입 및 구축
⑥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UI 기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전환 구축	⑬ 자동차민원포털 통합 구축
	⑭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재구축
	⑮ 건설기계시스템 재구축
	⑯ 이륜차시스템 재구축
	⑰ 동원관리시스템 재구축
	⑱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8) 국토교통부 제출자료